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1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천준호ㆍ이해식ㆍ김남근

김 윤・고민정・장철민

강준현 · 김용만 · 주철현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 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 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수익(국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총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자
- 2.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금액(국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

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1조제2항, 제22조제 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 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 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중개업자의 책임)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 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 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 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 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로 본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 <삭 제> 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 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u>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항</u>

제21조(금지행위) ① (생 략)

<신 설>

- 제21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수 익(국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 각종부가서비스를 통한 총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② (생 략)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자

- 2.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금 액(국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1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 3. (생략)

② ~ ④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u>제21</u> 조제2항, 제22조제
<u>1하</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
<u>개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